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상금 지급 〉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316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상금 지급	2

I. 개요

1.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31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강일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5. 9. 26.

(3) 회 부 일 : 2025. 9.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상금 지급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9조의2(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u> <u>① 국가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본인이나 구조대상자가 아닌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u> <u>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상자 또는</u>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생략)	<u>의사자유족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u> 1. <u>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u> 2. <u>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제1항의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1항의 보상금과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차액</u> ④ <u>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u> ⑤ <u>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 지급절차,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적극적 행위(이하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하여, 당사자 또는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¹⁾

< 현행법의 적용범위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현행법은 구조행위를 한 의사자 또는 의상자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구조대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와 그 희생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현행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 한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²⁾,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만 구조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결과적으로 손해로 인한 보상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공익적 목적, 즉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를 위해 행한 의로운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체계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보상금액은 그 물건의 교환가격 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

④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구조행위로 인한 경우만 인정하거나, 의사상자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도 구조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인한 손해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 의사자유족과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사자유족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의사자의 경우 유족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³⁾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승계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이때 손해배상책임 등 상속분은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고 배우자의 경우 일정분이 가산될 수 있음⁴⁾.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되고, 이를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내용도 없으므로, 배우자에게 모든 보상금이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전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결국, 손해배상책임은 상속인 간 분배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은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균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규정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의사자유족이 각각 신청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의사자및 의사자유족에게 지급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그와 밀접한 행위”는 삭제하고, “구조행위를 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상금 지급 및 반환 관련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지자체에 개선된 제도 안내 등을 위해 시행일자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 그간의 지급 사례, 별도 민원·소송 등이 부재했던 점을 감안 제도 도입 실익 낮고, 구조행위 관련 고의·과실 여부 등의 판단은 사안별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사법적 영역임을 감안 신중 검토 필요

문 의 처
02)6788-5497